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김해식 연구위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 EU는 회원국 보험회사에 Solvency I 보다 강력한 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2016년부터 적용함.
 - EU 감독당국은 Solvency II보다 느슨한 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비회원국의 보험회사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역내 보험회사가 역외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Solvency II를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EU 역내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도 늘어났지만, EU 시장에 진출한 역외 보험회사 역시 규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U는 Solvency II와 비회원국 지급능력감독제도의 동등성(equivalence) 정도를 평가하는 동등성 인정 제도를 통해 역외 보험회사의 EU 보험시장 내 규제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비회원국의 감독 수준을 높여 역내 보험회사의 해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Solvency II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
 - EU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와 Solvency II의 유사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 동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해당국 역외 보험회사에 Solvency II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면제하여 EU 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역외 보험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덜어줌.
 - 이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제도가 Solvency II에 수렴하는 결과를 가져와 EU 보험회사의 해외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우리나라도 지급여력평가를 포함한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체계의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 보험회사가 유럽 보험시장을 개척하는 데 EU Solvency II 동등성 제도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감독 로드맵은 EU Solvency II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제도의 장기적인 수렴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보험산업은 Solvency II 동등성 제도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

- 특히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 재보험 수재를 촉진하고 재보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동등성 제도는 출재보험료 기준 세계 양대 시장인 EU 시장 진출에 좋은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유럽연합(EU)은 2016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새 지급능력감독제도인 ‘Solvency II’¹⁾를 시행
 - EU는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포함하는 보험회사 지급능력감독 체계(Solvency II)를 15년 만에 완성하여 우리나라 등 여러 나라의 보험회사 지급능력감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2001년 시작된 Solvency II는 2016년부터 기존 14개 보험 관련 지침(Solvency I)을 대체함.
 - Solvency II는 전 세계 보험시장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경제권(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회사 지급능력감독제도로 기능하게 됨.
 - EEA에는 EU 회원국 외에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²⁾이 포함됨.

- 한편, EU는 비회원국 보험회사(역외 보험회사)가 EEA에서 영업할 경우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과 Solvency II를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평가하는 ‘동등성(Equivalence)’ 개념을 도입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된 비회원국 보험회사에는 자국 감독기준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Solvency II 적용 부담을 덜어줌.
 - EU는 불필요한 규제의 중복을 피하고 국제보험시장의 개방을 촉진하는 한편 보험소비자가 국제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동등성 평가 제도를 운영
 - 2016년 현재 EU는 스위스, 일본, 호주 등 8개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에 대해 “Solvency II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함.

-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이 Solvency II와 동등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 EEA에서 영업하고 있거나 영업하려는 비회원국의 보험회사는 역내 보험회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비회원국 보험회사에 EU 내 영업점 설치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감독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이에 EU 보험시장에서 역외 보험회사가 시장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Solvency II가 미칠 영향과 그 영향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동등성 인정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1) Solvency II는 Directive 2009/138/EU와 Directive 2014/51/EU(“Omnibus II”)에 근거함.

2)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가 있음.

2. Solvency II와 역외 보험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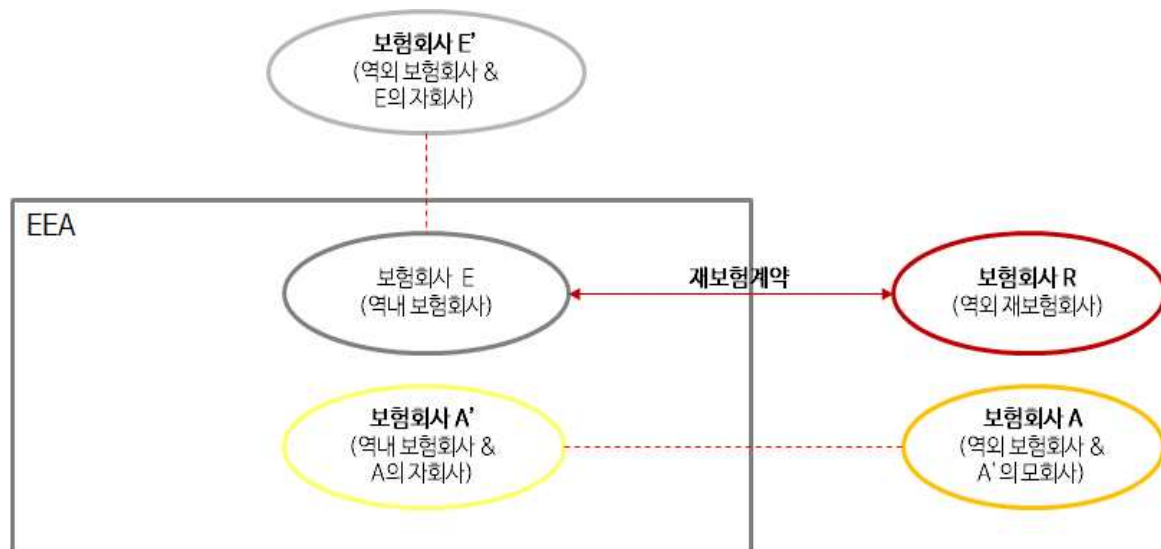


가. 역외 보험회사에 대한 Solvency II 적용

■ EU Solvency II는 EEA 역내 보험회사에 적용될 뿐 아니라 재보험계약이나 그룹 감독과 관련하여 역외 보험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

- Solvency II는 역내 보험시장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주된 근거지를 역내 혹은 역외 어디에 두든 간에 경쟁을 왜곡하고 규제 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역외 보험회사를 규제함.
 - 결과적으로 역외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이나 그룹 전체의 지급여력 측정 및 그룹 감독을 통해 Solvency I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Solvency II는 크게 세 영역에 대한 역외 보험회사 감독조항을 두고 있음.
 - 역내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맺으려는 역외 재보험회사(〈그림 1〉의 R) 지급능력감독
 - 역내 보험그룹의 역외 자회사(〈그림 1〉의 E') 지급능력감독
 - 역내 자회사를 가진 역외 보험그룹(〈그림 1〉의 A) 지급능력감독

〈그림 1〉 Solvency II가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역외 보험회사



주: 보험회사 A는 A'를 지배하는 중간 지주회사나 모회사(sub-group)를 EEA 내에 두지 않음.

나. 역외 보험회사에 대한 Solvency II 영향

■ Solvency II는 EEA 역내에서 재보험계약을 추진하는 역외 재보험회사가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역내 회원국의 금융당국이 역외 재보험회사에 추가적인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Solvency II는 역내 보험회사가 맺은 재보험계약의 상대방 보험회사가 역내 보험회사이거나 역외 보험회사이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자산 담보 요구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³⁾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역외 재보험회사가 속한 나라의 지급능력 감독이 Solvency II와 동등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임.⁴⁾
-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역외 재보험회사에 추가적인 감독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역외 재보험회사에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역외 재보험회사는 역내 재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 다국적 보험그룹의 경우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에 따라 다양한 지급여력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Solvency II는 연결기준 지급여력평가 시 역외 자회사에 기본적으로 Solvency II 적용을 요구함.

- 역외 자회사는 자국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Solvency II 적용으로 준비금을 많이 요구받거나 가용 자본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또는 요구자본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EEA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보험그룹은 역외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지급능력감독이 동등성을 인정 받을 경우 역외 자회사에 Solvency II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⁵⁾

■ 역외 보험그룹은 지급여력평가를 포함하여 Solvency II의 그룹감독을 받거나 역내에 추가로 모회사나 지주회사(EEA subgroup)를 설립하여 그룹감독을 받아야 함.

- Solvency II 그룹감독의 최종 대상은 모회사나 지주회사에 해당하며, 해당 그룹은 지급여력평가 시 그룹 추가자본 요구, 내부 거래, 지배구조, 임원 적격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함.
- 역외 보험그룹은 본사가 위치한 나라의 그룹감독이 Solvency II와 동등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EEA subgroup을 설립하지 않는 한 상당한 그룹감독을 부담해야 함.⁶⁾

3) 제173조(Prohibition of pledging of assets).

4) 제172조(Equivalence) 제3항.

5) 제227조(Related third-country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6) 제215조(Ultimate parent undertakings at Community level).

3. EU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절차 및 현황



가. EU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절차

■ EU는 역외 보험회사가 위치한 국가의 건전성 체계와 Solvency II를 비교하여 전부 또는 부분 동등으로 나누고 부분 동등의 경우 인정 기간을 10년 또는 특정 시점까지로 제한함.

- 역외 보험회사가 Solvency II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재보험계약의 역외 재보험회사, 역외 자회사 지급여력평가, 역외 보험그룹 감독에 대하여 각각 동등성 제도가 도입됨.
- 동등성 유형에는 전부 동등(full equivalence), 조건부 동등(provisional equivalence), 시한부 동등(temporary equivalence)의 세 가지가 있음.
 - ‘전부 동등’은 일단 인정되면 금융당국의 정기적인 점검은 받아야 하지만 동등 인정 기간에 제약이 없는 형태로 재보험계약, 역외 자회사 지급여력평가, 그룹감독에 적용
 - 한편, ‘전부 동등’ 대신 지급여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등’이 부과될 수도 있고, 재보험계약과 그룹감독에 대해서는 ‘시한부 동등’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음.⁷⁾
 - 조건부 동등 결정의 경우 비회원국은 10년마다 동등성을 다시 평가받게 되며, 시한부 동등은 2020년 12월까지만 동등성이 인정됨.

■ 동등성 여부는 비회원국의 지급능력감독에 대한 유럽보험감독국(EIOPA)의 평가에 기초하여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최종적으로 결정함.

- 집행위원회는 EIOPA의 동등성 평가에 기초하여 동등성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유럽의회나 이사회가 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해 3개월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EIOPA는 비회원국 건전성 감독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발간하거나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의 동등성 인정 여부 결정은 관보 게재 후 20일 내에 효력 발생
- EIOPA가 비회원국의 건전성 감독체계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건전성 감독자원의 충분성, 자본규제 충분성, 지배구조 요건 등이 있음.
 - 비회원국이 Solvency II와 동등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거나 동등한 수준의 감독체제로 이행 중인 경우 ‘시한부 또는 조건부 동등’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짐.

7) 제227조(조건부 동등), 제172조 및 제260조(시한부 동등).

나.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현황

■ 2016년 현재 EU는 8개국의 지급능력감독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⁸⁾

- EU는 관보를 통해 스위스와 버뮤다에는 ‘전부 동등’ 결정을, 호주 등 6개국에는 역외 자회사의 지급능력평가에 ‘조건부 동등’ 지위를, 일본에는 재보험계약에 ‘시한부 동등’ 지위를 부여함.
- 스위스와 버뮤다는 재보험계약, 역외 자회사 지급능력평가, 역외 보험그룹 감독 모두 Solvency II 와 동등하다고 평가받아 이들 국가에 위치한 역외 보험회사는 Solvency II 적용을 면제 받음.

〈표 1〉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현황

구분	스위스	버뮤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브라질	호주	일본
재보험			-	-	전부 ¹⁾	-	-	시한부
그룹지급능력평가	전부	전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조건부
그룹감독			-	-	-	-	-	-

주: 1) Solvency II 동등성 인정제도가 아닌 미국-EU 간 재보험 무역협정(covered agreement)에 의한 결과임.

■ 한편 EU와 미국은 2017년 재보험계약에 한정된 무역협정(covered agreement) 체결로 재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감독을 상호 인정하기로 하여 재보험계약 담보 요구 등을 금지함.

- EU와 미국의 재보험 협정은 재보험에 대해서는 그룹감독을 포함한 ‘전부 동등’ 아니면 ‘시한부 동등’ 지위만을 인정하는 Solvency II의 감독 틀을 벗어나는 특이한 사례
- 미국은 보험회사 건전성감독 현대화 작업과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NAIC의 재보험개혁모델법을 근거로 EU가 미국 지급능력감독의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⁹⁾
 - 협정 체결로 미국 재보험회사는 EU로부터 항구적인 동등성을 인정받게 되므로 시장점유율이 9.6%에 불과한 유럽 재보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유럽 재보험회사의 북미 재보험시장 점유율이 33%에 이르는 가운데¹⁰⁾ 주별 보험감독이 행해지는 미국에서는 재보험회사에 대한 담보 규제가 재보험 영업에 부담으로 작용¹¹⁾
 - 초기 동등성 인정에 소극적이던 EU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여 협정 체결을 추진

8) Lloyd's: Equivalence under Solvency II, <https://goo.gl/akvfHG>.

9) Kotecha · Payne(2010. 12), "Solvency II Equivalence: Implications for the US Insurers", Society of Actuaries, 현대화 작업은 김해식 · 조재린(2012. 4. 23),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개혁 동향 및 시사점」 참조, 재보험개혁모델법은 NAIC(2016), "Covered Agreement on Re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Collateral"; 송윤아(2010. 12. 27), 「미국의 재보험규제 변화와 시사점」 참조.

10) IAIS(2016), Global Insurance Market Report.

11) 50개주 가운데 18개주는 여전히 재보험 담보 규제를 시행; NAIC(2016) 참조.

4. 결론 및 시사점



-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는 EU 역내 보험시장은 물론 역외 보험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려는 EU의 Solvency II 국제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 EU는 역내 보험시장에 진출한 역외 보험회사가 Solvency II 대신 자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준수 부담을 덜어주는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를 도입함.
 - EU는 Solvency II를 적용해야 하는 역내 보험회사가 시장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 보다 느슨한 지급능력감독기준을 적용받는 역외 보험회사에는 회원국이 Solvency II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보험 담보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 Solvency II와 동등한 수준의 지급능력감독이 이루어지는 나라의 역외 보험회사가 자국의 감독 기준을 적용할 경우 마치 Solvency II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함.
 - 또한 동등성 제도를 통해 비회원국에도 Solvency II에 상응하는 지급능력감독 기준이 확산된다면 역외 보험시장에서 활동하는 EU 보험회사의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도 보험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내 보험회사의 EU 보험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Solvency II의 동등성 제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고 Solvency II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지급능력감독제도가 Solvency II 동등성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EU는 비회원국이 Solvency II와 유사한 위험기준 감독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 또는 시한부 동등’을 부여하고 있음.
 - 무엇보다 EU Solvency II 동등성 제도는 국내 보험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재보험 수재 확대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동등성 제도는 출재보험료 기준 세계 양대 시장에 진출할 좋은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임. **kiqi**